

#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임희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하남시체육회 직원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,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체육회 인건비 관련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준용(안 제8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1호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